

경력경쟁채용등 임용예정계급별 자격증 구분 및 경력기준(제21조제1항제2호 관련)

직렬·직류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행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변리사			
	선거행정					
	회계	공인회계사(4)	공인회계사			
사서	사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전산	전산개발	기술사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기능장 기사(6) 산업기사(9)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9)	기사(3) 산업기사(6)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6)	기사 산업기사(3)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3)	산업기사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전산기기					
	데이터					
	정보보호					
식품 위생	식품위생	기술사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위생사(12) 영양사(12)	기능장 기사(6) 산업기사(9)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위생사(8) 영양사(8)	기사(3) 산업기사(6)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위생사(5) 영양사(5)	기사 산업기사(3)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위생사(2) 영양사(2)	산업기사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위생사 영양사
시설	일반기계	기술사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기능장 기사(6) 산업기사(9)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기사(3) 산업기사(6)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기사 산업기사(3)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산업기사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전 기					
시설	일반토목					
시설	건축	기술사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건축사(5)	기능장, 기사(6) 산업기사(9)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건축사	기사(3) 산업기사(6)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기사 산업기사(3)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산업기사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시설	시설조경	기술사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기사(6) 산업기사(9)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기사(3) 산업기사(6)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기사 산업기사(3)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산업기사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방송	통신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3)	기사	산업기사

통신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기사(6) 산업기사(9)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산업기사(6)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산업기사(3)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통신기술					
운전	운전					제1종보통운전면허 제2종보통운전면허
위생	위생	기술사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기능장 기사(6) 산업기사(9)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기사(3) 산업기사(6)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기사 산업기사(3)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산업기사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사역					
조리	조리	기술사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기능장, 기사(6) 산업기사(9)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기사(3) 산업기사(6)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기사 산업기사(3)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산업기사 (자격증종류는 별표 12에 의함)

- 비고
1. 직류별로 정한 해당 자격증 소지 후 ()안의 기간(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사무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직류별로 상위 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 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5급으로의 경력경쟁채용등 대상 자격증(소요경력 포함) 소지 후 관련분야에서 2급은 10년 이상, 3급은 8년 이상, 4급은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4.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채용등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